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영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교,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조직·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
2.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
3.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때에는 학생의 필요, 지역 또는 학교의 여건, 기대효과 등을

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, 학교의 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간 통합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다.

제4조(연수 등) ① 영 제13조에 따른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생맞춤통합지원 목표·내용에 관한 사항
2.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3.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